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대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asset.daishin.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6.03.1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03.2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 조조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6. 03.10.)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펀드 코드: 61295)

투자 위험 등급 :				
1 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 집합투자기구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 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 (☎02-769-3233)		
모집(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수익증권[1조좌]
효력발생일	2016.03.28.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C	C-e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전환수수료	해당사항없음		
보수 (연, %)	판매	0.900	1.0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 0.800, 신탁업자 :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 0.02	
	기타	0	0.0023
	총보수 · 비용	1.7600	1.8623
	합성 총보수 · 비용	1.7600	1.8623
※ 주석사항	<p>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 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23 ~ 2015.10.22]</p> <p>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 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23 ~ 2015.10.22]</p> <p>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 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주5)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6)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u>최초설정일로부터 매6개월 후급</u>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사유발생 시 지급)</p> <p style="color: red;">※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사항' 참조</p>		

매입 방법	· 15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매입 · 15시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매입	환매 방법	· 15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 15시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1,000 쪽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 style="color: red;">※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익자의 재산형성과 주택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자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투자(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자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관리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투자(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조건(예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

친환경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기업

사회책임을 하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 펀드 운용의 기본 개념

- SRI(사회책임투자) 펀드 본연의 특징 및 강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운용

- 기업의 펀더멘탈 +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분을 감안하여 투자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을 취하는 기업은 이해관계자(투자자, 소비자, 종업원, 금융기관 등)들과 공존하면서, 기업의 본래 목적인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접근

- 반면, CSR 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행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2016.03.28. 현재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조윤호	1976	책임 운용역 (팀장)	62개	1,474억	KAIST 산업경영학과 연세대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2002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4년 대신증권(주) 지점 2005년 대신투신운용(주) AI팀 상품개발 2010년 (현)대신자산운용(주) 퀀트운용본부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5.03.11 ~16.03.10	14.03.11 ~15.03.10	13.03.11 ~14.03.10	12.03.11 ~13.03.10	11.03.11 ~12.03.10
Class C	-10.03	2.18	-1.87	-8.78	-2.05
비교지수	-3.45	-0.68	-3.10	0.07	2.44

주1)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전체 종류 수익증권 중 대표 종류 수익증권만 작성되었고 기타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신탁재산을 주식에 70% 이상 수준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

	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절매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수익자의 수익극대화 도

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III. 집합투자기구 기타정보

(1)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단,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이익을 지급받는 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내용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61295
A	61629
C	61293
C-e	757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61295
A	61629
C	61293
C-e	757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10.23.	최초설정
2007.11.08.	약관변경(C-e 클래스 추가 및 환매수수료 변경)
2008.06.12.	약관변경(투자대상 추가 - 주식선물)
2008.10.21.	세제혜택에 따른 변경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2010.04.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0.05.03.	판매보수 변경(인하)
2011.01.14.	집합투자업자사명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자구수정, 재무재표확정에 따른 변경, 시행령 변경에 따른 변경(이익분배, 50억미만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사항 및 수시 공시반영, 업무보고서)
2011.08.0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2.01.13.	모자형 구조로 전환, 펀드명 변경(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투자신탁 제H1호[주식]-> 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12.06.01.	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김종석->경우현)
2013.12.1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당사 자체 투자 위험등급 기준 변경, 서식개정반영,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4.12.17.	펀드명 변경(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자투자신탁[주식]->대신 SRI 증권자투자신탁제 1호[주식]), 모두자신탁 및 동일 모두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 명칭변경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 내용 반영,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반영,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6.01.20.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모두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FATCA 제도 도입에 따른 반영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15.07.08 시행, 2015.10.23 시행, 2015.10.25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5.07.08 시행, 2015.10.23 시행, 2015.10.25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2015.10.25 시행)

2016.03.28.	운용전문인력 변경(경우현->조윤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6.01.21)에 따른 요약정보 신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6.01.25 시행)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보수, 수수료 삭제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대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여의도동) 대신증권빌딩 5층(우.150-884) 02-769-3233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6.03.28.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조윤호	1976	책임 운용역 (팀장)	62 개	1,474억	KAIST 산업경영학과 연세대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2002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4년 대신증권(주) 지점 2005년 대신투신운용(주) AI팀 상품개발 2010년 (현)대신자산운용(주) 퀸트운용본부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퀸트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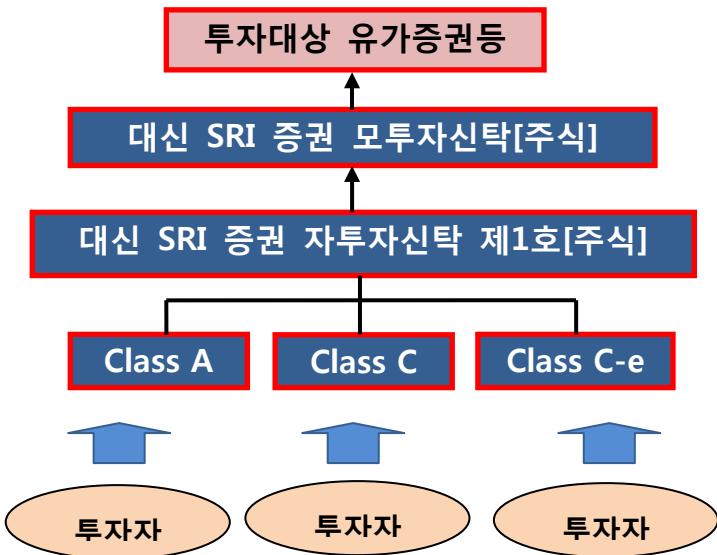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경우현	2012.06.01. ~ 2016.03.27.
조윤호	2016.03.28.~ 현재

주1) 2016년 3월28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펀드코드 : 61629)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펀드코드 : 61293)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e(펀드코드 : 75787)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A7355)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 90% 이상투자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61295)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2호[주식](45772)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3호[주식](86489)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4호[주식](77885)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5호[주식](77886)		
대신 장기주택마련 SRI 증권 자투자신탁[주식](76895)		
대신 연금저축 SRI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7748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이상	-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10%이하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③	금융기관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④	기타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⑤	투자비율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ol style="list-style-type: none">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5. 투자신탁재산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투자 대상

-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편입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70%이상	-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②	채권	30%이하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은 제외)

③	어음	3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인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3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이하	-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⑥	수익증권등	30%이하	- 법 제110조의 수익증권,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⑦	증권의 대여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⑨	증권의 차입	20%이하	- 규약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국내주식	60%이상	- 규약 제17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의 투자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⑪	단기대출	-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⑫	금융기관 예치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⑬	기타	-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⑤, 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⑤, ⑩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익증권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볼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p>보증한 채권</p> <p>-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조 제2항제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u>법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u>),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동일법인등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p>	
③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⑤ 계열회사 지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	

분증권	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 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⑥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비율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 대상의 ⑥~ ⑨, 나. 투자제한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자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자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투자(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자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관리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투자(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조건(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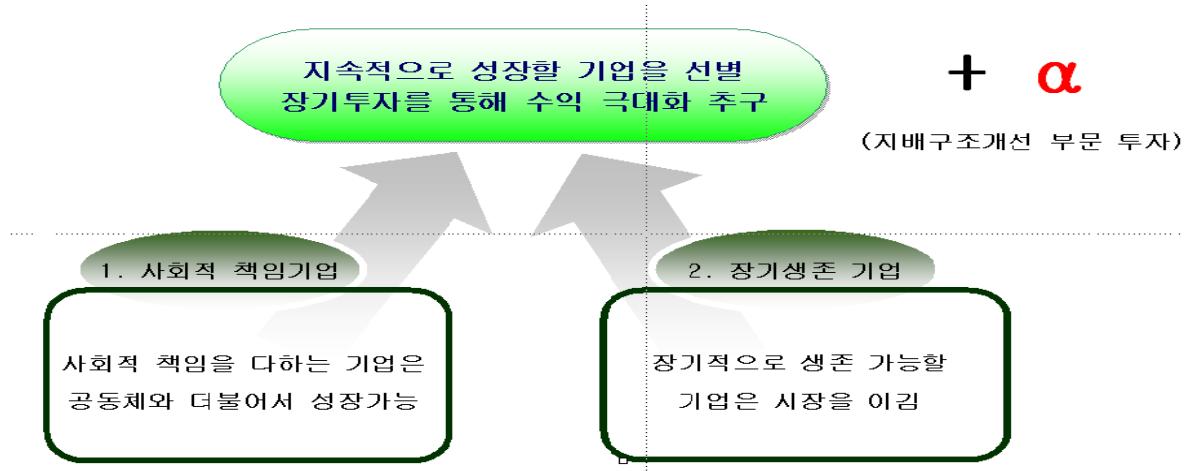
-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
-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
- 친환경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기업
- 사회책임을 하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 펀드 운용의 기본 개념

- SRI(사회책임투자) 펀드 본연의 특징 및 강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운용
- 기업의 펀더멘탈 +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분을 감안하여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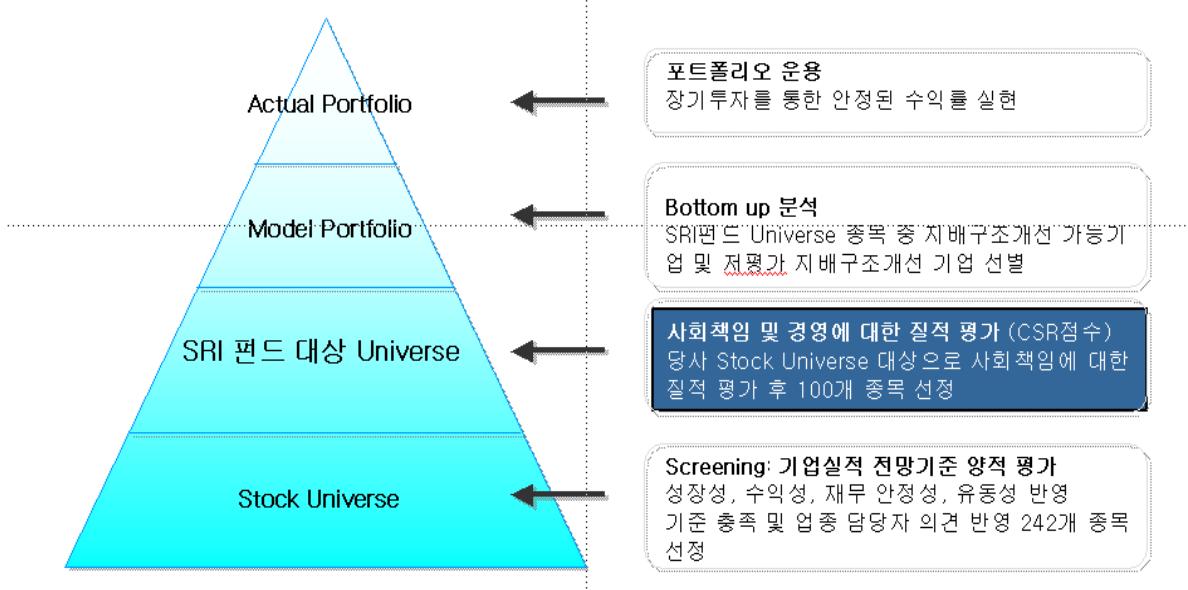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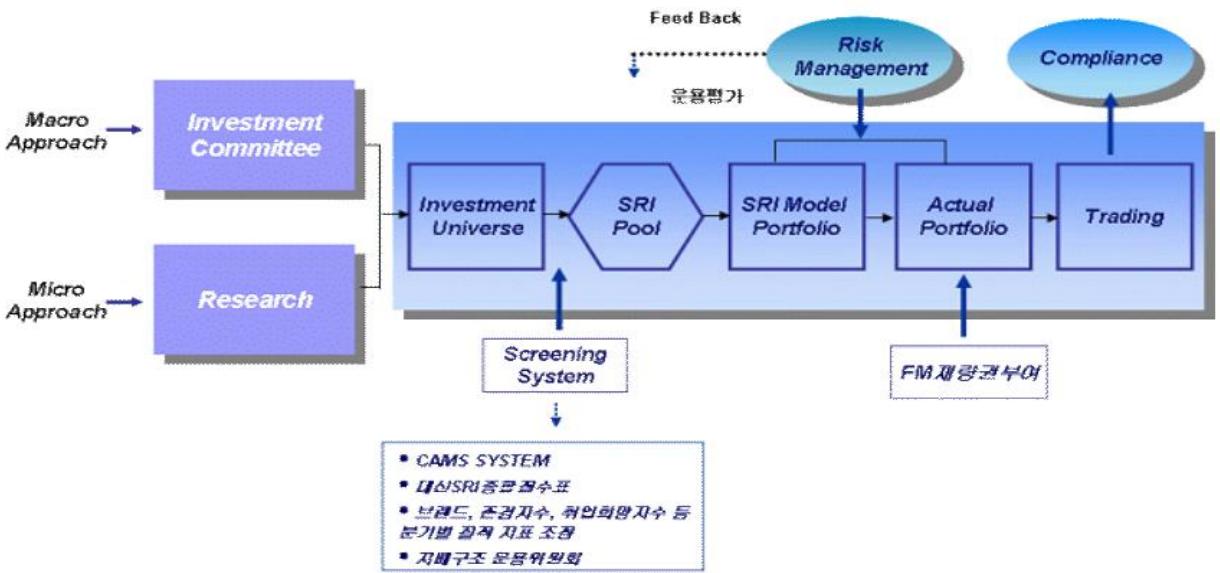
- CSR 을 취하는 기업은 이해관계자(투자자, 소비자, 종업원, 금융기관 등)들과 공존하면서, 기업의 본래 목적인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접근
- 반면, CSR 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행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세부전략

□ 재무적 양적 평가 + 사회책임 및 경영에 대한 질적 평가





※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 금리 X 10%

(2)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투자위원회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기본적으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수익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위험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의 투자위원회에서 선정한 투자후보종목군에서 투자종목선정과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주로 결정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신탁재산을 주식에 70%이상 수준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이상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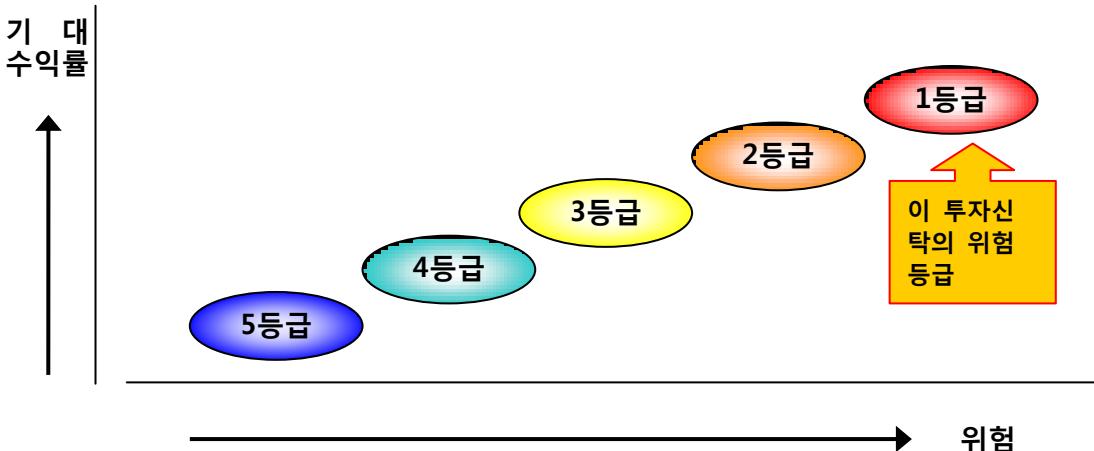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대신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 및 고위험자산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구조화된 파생형 집합투자기구(원금보존추구형 제외)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40% 초과 6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 및 고위험자산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40%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주식형 및 파생형)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40%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절대수익추구형 집합투자기구 (주식 매입금의 90% 이상 해지하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원금보존추구형)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6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 주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대신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3)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 이하), 투기등급CP(B+ 이하),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4)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러한 중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5)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 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을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8)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 주9)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0) 파생상품의 편입비는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11)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자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2)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특정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수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3)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주15)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 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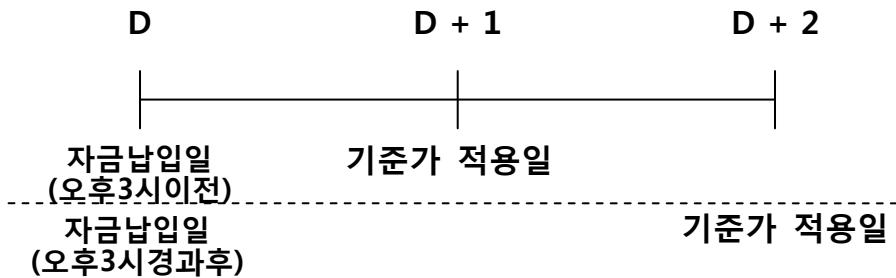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ass A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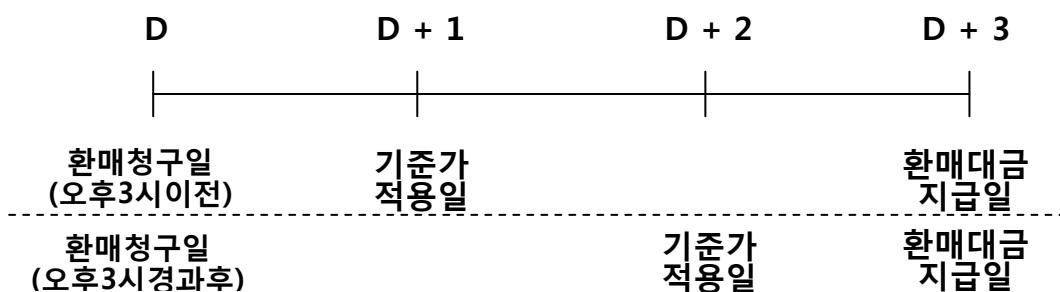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 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3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 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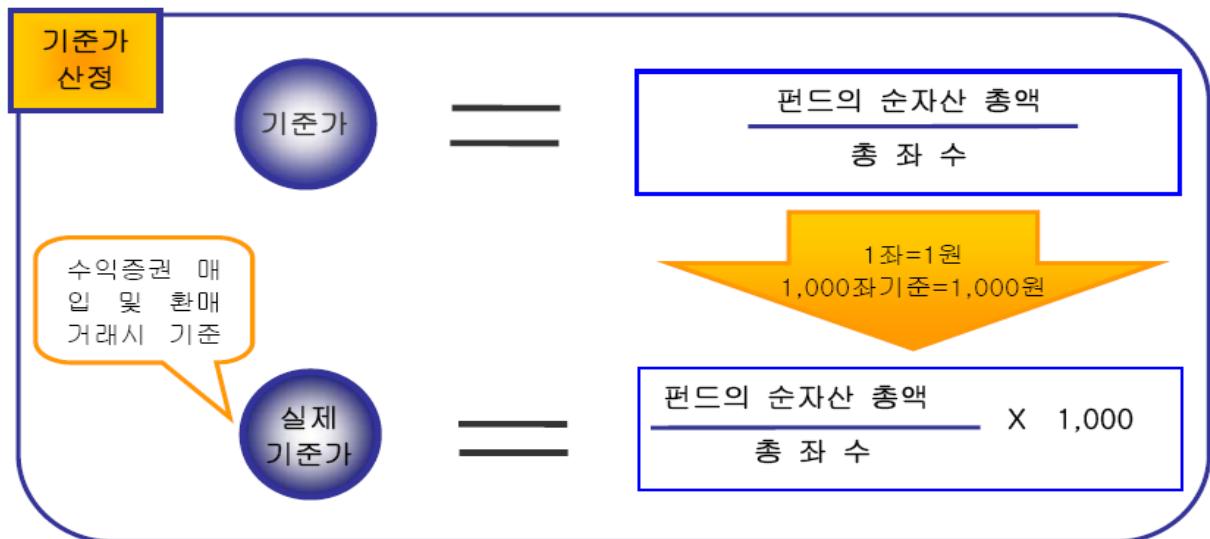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 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가격정보를 기초로 한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e	
판매수수료	납입금의 1%	-	-	매입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分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e	
집합투자업자	연 0.8000%	연 0.8000%	연 0.8000%	
판매회사	연 0.9000%	연 1.0000%	연 0.1200%	
신탁업자	연 0.0400%	연 0.0400%	연 0.0400%	매6개월
일반사무관리	연 0.0200%	연 0.0200%	연 0.0200%	
기타비용	연 0.0000%	연 0.0023%	연 0.0000%	
총보수·비용	연 1.7600%	연 1.8623%	연 0.9800%	
합성총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보수 · 비용포함)	연 1.7600%	연 1.8623%	연 0.9800%	
증권거래비용	연 0.4717%	연 0.4764%	연 0.2452%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23 ~ 2015.10.22]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23 ~ 2015.10.22]
-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9	649	1,044	2,1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279	649	1,044	2,148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1	591	1,015	2,1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191	591	1,015	2,198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314	544	1,2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100	314	544	1,206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 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9기(2014.10.23 - 2015.10.2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8기(2013.10.23 - 2014.10.2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7기(2012.10.23 - 2013.10.2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9기	제 8기	제 7기
	(2015.10.22)	(2014.10.22)	(2013.10.22)
운용자산	603,619,149	952,207,856	1,320,626,812
증권	602,437,833	948,816,835	1,316,918,36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81,316	3,391,021	3,708,45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63	1,557	14,455,665
자산총계	603,619,912	952,209,413	1,335,082,47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186,356	8,941,736	25,783,926
부채총계	6,186,356	8,941,736	25,783,926
원본	687,537,265	1,041,413,916	1,371,060,773
수익조정금	-17,014,740	11,786,104	11,612,414
이익잉여금	-73,088,969	-109,932,343	-73,374,636
자본총계	597,433,556	943,267,677	1,309,298,551
손익계산서			
항 목	제 9기	제 8기	제 7기
	(2014.10.23 - 2015.10.22)	(2013.10.23 - 2014.10.22)	(2012.10.23 - 2013.10.22)
운용수익	6,510,133	-42,606,195	65,033,692
이자수익	19,275	45,569	542,66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순)	6,490,858	-42,651,764	64,491,027
기타 수익	6,959	1,947	2,653
운용비용	14,552,366	20,111,882	32,534,922

관련회사 보수	14,552,366	20,111,882	32,534,92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76,040	245,924	385,475
당기순이익	-8,211,314	-62,962,054	32,115,94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제9기(2015.10.22)		제8기(2014.10.22)		제7기(2013.10.22)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81,316		1,181,316		3,391,021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0,21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602,437,833		948,816,835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0		0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0		0	
2. 전세권						
기타						
자 산 총 계	763		763		1,557	
						14,455,665
						5,830
						14,449,835
		603,619,912			952,209,413	
						1,335,082,477
부 채						
운용부채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6,186,356		8,941,736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6,186,356			8,941,736		
						25,783,926
						14,391,240
						11,392,686
						0
						25,783,926
자 본						
1. 원 본	687,537,26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90,103,709					
(발행좌수 당기: 687,537,265 좌 전기: 1,041,413,916 좌 전전기: 1,371,060,773 좌)			-73,088,969 -17,014,740			
(기준가격 당기: 944.81 원 전기: 966.44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597,433,556			943,267,677		
						1,309,298,551
		603,619,912		952,209,413		
						1,335,082,47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9기(2014.10.23-2015.10.22)		제8기(2013.10.23-2014.10.22)		제7기(2012.10.23-2013.10.22)	
	금 액		금 액		금 액	
1. 투자수익						
1. 이자수익	19,275	26,234	45,569	47,516	542,665	545,318
2. 배당금수익	6,959		1,947		2,653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 지분증권매매차익		32,312,704		11,461,562		76,369,91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1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1,461,562		76,369,916	
7. 기타거래차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지분증권매매차손		25,821,846		54,113,326		11,878,88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205		482		4,485	
8. 기타거래손실	25,821,641		54,112,844		11,874,404	
운용비용						
1. 운용수수료	6,336,606	14,728,406	8,763,261	20,357,806	13,676,204	32,920,397
2. 판매수수료	7,899,260		10,910,827		18,175,257	
3. 수탁수수료	316,500		437,794		683,46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76,040		245,924		385,47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8,211,314		-62,962,054		32,115,94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1194308		-0.06045824		0.02342416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투자신탁(전체)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10.23 - 2015.10.22	10	10	0	0	4	4	6	6
2013.10.23 - 2014.10.22	13	13	0	0	3	3	10	10
2012.10.23 - 2013.10.22	23	22	0	0	10	10	13	13

주1) 2013.10.23 - 2014.10.22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96좌/1,796원

주2) 2012.10.23 - 2013.10.22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96좌/1,796원

나. Class A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10.23 - 2015.10.22	0	0	0	0	0	0	0	0
2013.10.23 - 2014.10.22	1	1	0	0	0	0	0	0

2012.10.23 - 2013.10.22	1	1	0	0	0	0	1
-------------------------	---	---	---	---	---	---	---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다. Class C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10.23 - 2015.10.22	10	9	0	0	3	3	7	6
2013.10.23 - 2014.10.22	13	13	0	0	3	3	10	9
2012.10.23 - 2013.10.22	22	21	0	0	10	9	13	13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라. Class C-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10.23 - 2015.10.2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013.10.23 - 2014.10.22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2012.10.23 - 2013.10.22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주1) 2013.10.23 - 2014.10.22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96좌/1,796원

주2) 2012.10.23 - 2013.10.22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96좌/1,796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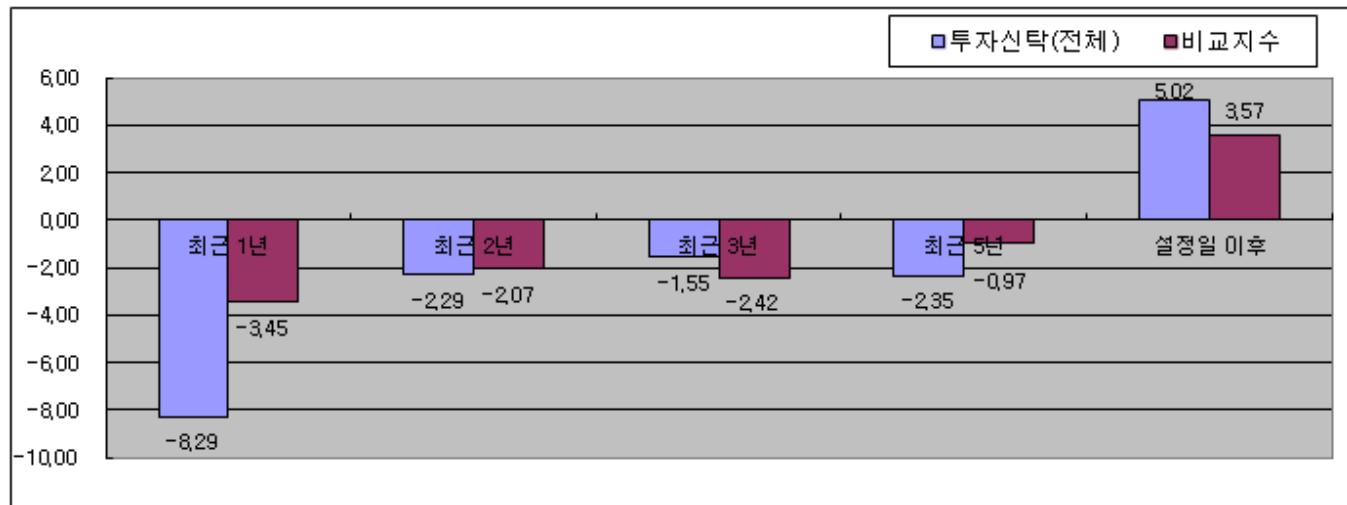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실적의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5.03.11 ~16.03.10	14.03.11 ~16.03.10	13.03.11 ~16.03.10	11.03.11 ~16.03.10	06.10.23 ~16.03.10
투자신탁(전체)	-8.29	-2.29	-1.55	-2.35	5.02
비교지수	-3.45	-2.07	-2.42	-0.97	3.57
Class C	-10.03	-4.12	-3.37	-4.22	2.85
비교지수	-3.45	-2.07	-2.42	-0.97	3.57
Class A	-9.93	-4.01	-3.27	-4.04	3.17
비교지수	-3.45	-2.07	-2.42	-0.97	3.66
Class C-e	-8.29	-2.43	-1.85	-2.40	0.89
비교지수	-3.45	-2.07	-2.42	-0.97	0.78

주1)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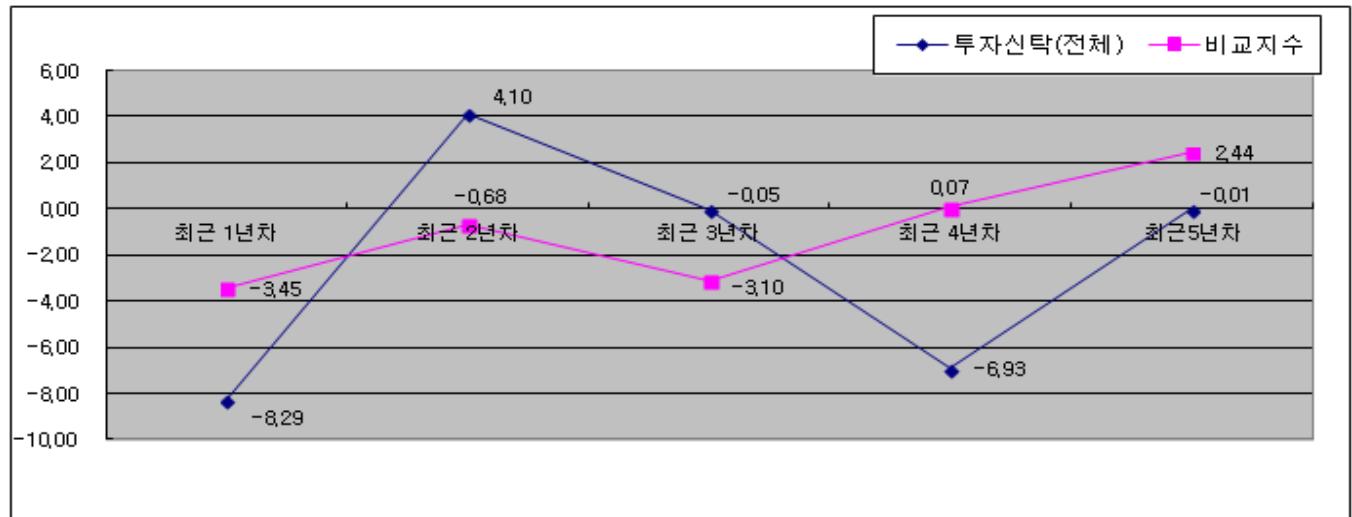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은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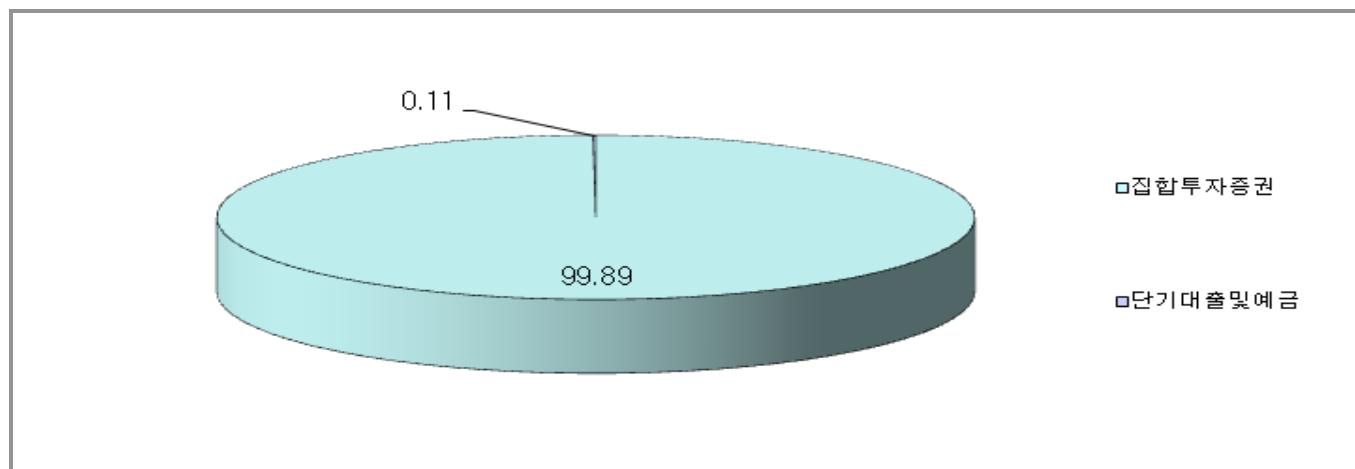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5.03.11 ~16.03.10	14.03.11 ~15.03.10	13.03.11 ~14.03.10	12.03.11 ~13.03.10	11.03.11 ~12.03.10
투자신탁(전체)	-8.29	4.10	-0.05	-6.93	-0.01
비교지수	-3.45	-0.68	-3.10	0.07	2.44
ClassC	-10.03	2.18	-1.87	-8.78	-2.05
비교지수	-3.45	-0.68	-3.10	0.07	2.44
ClassA	-9.93	2.29	-1.76	-8.55	-1.71
비교지수	-3.45	-0.68	-3.10	0.07	2.44
ClassCe	-8.29	3.80	-0.69	-6.30	-0.01
비교지수	-3.45	-0.68	-3.10	0.07	2.44

- 주1)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 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 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6.01.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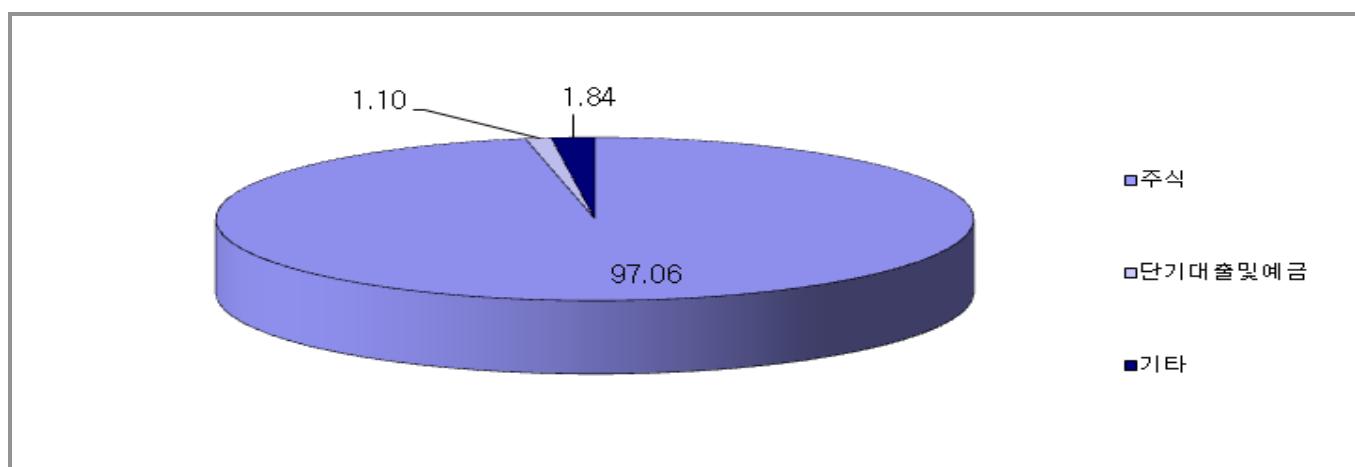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현황>

-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16.01.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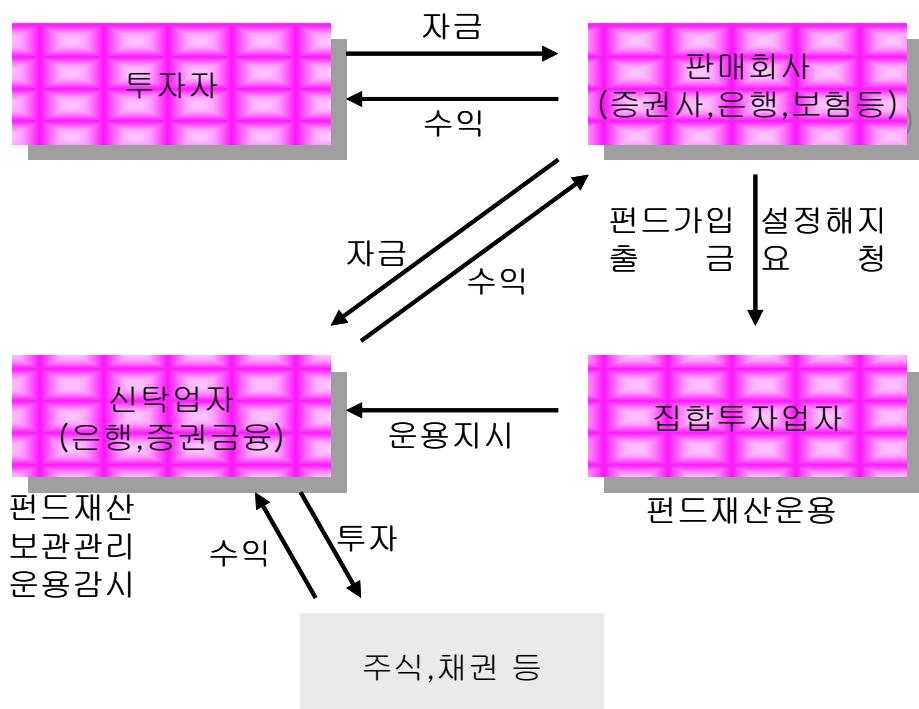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46	0	0	0	0	0	0	0	0	1	1	47
	(97.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	(1.84)	(100.00)
합계	46	0	0	0	0	0	0	0	0	1	1	47
	(97.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	(1.84)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대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대신증권빌딩5층 (연락처 : 02-769-3233, www.ditm.co.kr)
회사 연혁	1988. 3 대신투자자문(주) 설립 (납입자본금 10억원) 1988. 4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1996. 6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1996. 7 대신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1997. 7 투자신탁운용업 하가(주식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7. 7 공사채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9.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경영 인가(재정경제부) 2009. 6 140억 증자(납입자본금 440억) 2009. 8 280억 감자(납입자본금 160억) 2010. 5 대신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2012. 6 130억 증자(납입자본금 290억) 2013. 3 한국창의투자자문(주)흡수합병
자본금	290억
주요주주현황	대신증권(주) (100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순익계산서		
계정과목	2015.12.31	2014.12.31	계정과목	15.01.01 ~ ~ 15.12.31	14.01.01 ~ ~ 14.12.31
현금 및 예치금	27,320	33,710	영업수익	11,951	9,394
유가증권	7,495	3,339			
대출채권	132	134			
유형자산	251	336			
기타자산	2,936	2,974			
자산총계	38,134	40,493	영업이익	1,946	-886
예수부채	-	-	영업외수익	1,774	180
기타부채	4,549	5,789	영업외비용	3,942	5,041
부채총계	4,549	5,789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222	-5,747
자본금	29,000	29,000	법인세비용	-399	-502
자본잉여금	24,529	24,529			
이익잉여금	-19,829	-20,007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15	1,182			
자본총계	33,585	34,704	당기순이익	177	-5,245

라. 운용자산 규모

(2016.03.10. 현재 / 억좌)

구분	증 권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 산파생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1,652	3,016	3,634	3,350	2,016	866	854	2,330	5,508	23,22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 1588-1111
회 사 연 협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hana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익스콘벤쳐타워 4 층 ☎ 02-2168-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주)에프앤파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번지(운 니동)삼환빌딩4층 ☎ 02-399-3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19 (여의도동)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빌딩4 층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 동) 태화빌딩4층 ☎ 02-721-535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1)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한 사항

(2)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 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모두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두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호 및 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으로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

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모두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두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4월30일까지 직전 연도4월1일부터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p>①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증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p>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증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억원]

투자목적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	-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 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투자금융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